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020. 7.

미래인재정책국
과학기술안전기반팀

1. 개정이유

연구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7350호, 2020.6.9. 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분교(원)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세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등록요건 개선 및 업무 위탁범위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그 밖에, 법률의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인용 조항 정리 및 조문체계를 함께 정리함.

2. 주요내용

- 가. 현장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규모 분교(원) 또는 본교(원)와 거리가 가까운 분교(원)에 대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면제(안 제8조)
- 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행정처분 기준 및 대행기관 등록여건 정비(안 제14조, 안 별표6, 안 별표7)
 - 1) 대행기관의 법 위반행위별 행정처분(시정명령, 업무정지, 등록취소) 세부 부과기준 마련
 - 2) 현장여건 등을 반영한 대행기관 등록요건(장비요건) 개선
 - ※ 열·연기감지기 시험기, 집전식전위측정기 삭제, 소음측정기 추가
- 다. 연구실 안전기술 연구·개발 등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24조)
- 라. 시정명령 위반, 연구실안전관리비 미계상 및 부적절 집행 등 신설된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제26조, 안 별표10)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대통령령 제

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연구실 및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연구실 안전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2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2.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3. 연구실사고 발생 현황 및 조치 결과
4.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주체의 장에게 조사의 취지 및 내용, 조사 일시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연구실 안전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연구실 안전 또는 그 밖의 안전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연구기관등(이하 "대학·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및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그 밖에 연구실 안전이나 일반 안전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2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
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이하 "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학·연구기관등의 현황

2. 분야별 연구실사고 발생현황, 연구실사고 원인 및 피해현황 등 연구실
사고에 관한 통계

3. 기본계획 및 연구실 안전 정책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내 유해인자에 관한 정보

5.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6.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현황

7.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현황

8. 법 제30조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 현황

9. 제8조제6항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보고서 제출 등 법 및

이 영에 따른 제출·보고 사항

10.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주체의 장,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 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장 및 제23조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장 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정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정보에 대하여 확인 및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 및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장 등이 법 및 이 영에 따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제출·보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고는 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경우에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 보고

2.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연구실 사용제한 조치 등의 보고

제7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명을 연구실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대학·연구기관등의 연구책임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2.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과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사람
3. 해당 연구실의 사용 및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

제8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및 업무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해당

대학·연구기관등의 상시 연구활동종사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연구활동종사자(상시 연구활동종사자를 포함한다)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중 1명 이상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교 또는 분원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분교 또는 분원의 연구활동종사자 총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2. 본-분교 또는 본-분원이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3. 본-분교 또는 본-분원 간의 거리가 15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③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5.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법 제12조제1항의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6. 그 밖에 법 제12조제1항의 안전관리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리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2. 별표 2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 ⑤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의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작성)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의 유의사항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점검대상 및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자체평가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점검 :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1회 실시. 다만, 별표 3의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2. 정기점검 :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면제한다.

가. 별표 3의 저위험연구실

나.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연구실. 이 경우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3. 특별안전점검 : 폭발사고·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직접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인적 자격 및 물적 장비 요건은 별표 4와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직접 실시한 안전점검의 실시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고 안전점검이 적절하게 실시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연구주체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주체의 장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재실시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연구주체의 장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인적 자격 및 물적 장비 요건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연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을 말한다.

1. 연구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2. 연구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3. 연구활동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직접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고 정밀안전진단이 적절하게 실시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연구주체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주체의 장으로 하여금 정밀안전진단을 재실시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활용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주체의 장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을 검토하여 연구실의 안전관리가 우수한 대학·연구기관등에 대하여는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연구실의 중대한 결함)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결함을 말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 등

유해·위험물질의 누출 또는 관리 부실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부실

3.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유해·위험설비의 부식·균열 또는 파손

4. 연구실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침하·균열·누수 또는 부식

5.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병원체의 누출

제14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보유 현황

2. 장비 명세서

②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장비에 관한 요건은 각각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고, 대행기관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자가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⑤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변경된 등록증의 발급 및 대행기관 등록대장의 기록·관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 ⑥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시정 명령에 관한 처분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⑦ 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등록된 기술인력에 대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방법,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① 연구실책임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의 시작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해당 연구실의 안전 현황
- 2.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분석
- 3. 연구실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훈련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제10조제2항 및 별표 4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연구활동종사자는 제외한다.

- 2.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안전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 3. 연구실책임자
 - 4.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 5. 법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서 이 영 제23조제4항 제7호에 따른 연구실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로서 실시하는 전문강사 양성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① 대학·연구기관등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 1.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 4.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료
- 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 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내역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라 계상한 해당 연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내역과 제2항에 따른 전년도에 사용 내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연구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되는 사고조사반을 운영할 수 있다.

1.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
2. 연구주체의 장이 추천하는 안전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사고조사에 필요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② 사고조사반의 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③ 사고조사반의 책임자는 사고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실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고조사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고조사에 필요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종류는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질병·신

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하고,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을 신청할 때 제1항의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신청으로써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④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 피보험자·수익자의 수 및 보상금액 등을 말한다.

제20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의 운영)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서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연구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 운영규정, 연구실 안전환경 목표 및 추진계획 등 연구실 안전환경 체계가 우수하게 구축되어 있을 것

2. 연구실 안전점검 및 교육 계획·실시 등 연구실 안전환경 활동 실적이 있을 것
 3. 연구주체의 장 및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실 안전환경 관계자의 안전의식이 형성되어 있을 것
-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연구실이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 심사를 한 결과 해당 연구실이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⑥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⑦ 제5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연구실이 제6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만료일 6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1조(인증마크의 활용) 제20조제5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연구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인증마크를 해당 연구실에 게시하거나 해당 연구실의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제22조(지원대상의 범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대학·연구기관등과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 있는 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연구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제도개선, 안전관리 기준 등에 대한 연구, 개발 및 보급
 2. 연구실 안전 교육자료 연구, 발간, 보급 및 교육 실시
 3. 연구실 안전 네트워크 구축·운영
 4. 연구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5. 연구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등 안전문화 활동
 6. 연구실사고의 조사, 원인분석, 안전대책 수립 및 사례전파
 7.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조성 및 기반구축을 위한 업무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항목,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3조(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및 시설 현황
 2. 센터운영규정
 3. 사업계획서
 4. 그 밖에 연구실 현장 안전관리 및 신속한 사고 대응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하는 서류
- ② 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9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안전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실사고 발생 시 사고현황 파악 및 수습 지원 등 신속한 사고 대응에 관한 업무
2. 연구실 위험요인 관리실태 점검·분석 및 개선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기술 지원에 관한 업무
4. 연구실 안전관리 기술, 기준, 정책 및 제도 개발·개선에 관한 업무
5. 연구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연구실 안전 문화 활동에 관한 업무
6. 정부와 대학·연구기관등 상호 간 연구실 안전환경 관련 협력에 관한 업무
7. 연구실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업무

⑤ 센터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4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 기술 및 시책의 연구·개발 등에 관한 업무
2.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대행기관 기술인력이 받아야 하는 교육
3. 제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4. 제8조제6항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보고서의 접수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법 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10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에서 별표7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연구실 및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

(제2조 관련)

1. 대학·연구기관등이 설치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각 연구실에 대하여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상 연구실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
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법 제10조 및 제20조제3항
나.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에 의한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건설업(건설엔지니어링 포함), 도매 및 소매,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업, 정보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사업시설, 사업지원, 행정, 국방, 사회보장, 교육서비스,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협회, 수리(修理), 개인, 자가 소비생활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의 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업의 과학기술분야 부설연구소	법 제10조 및 제20조제3항. 다만,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연구실안전실태조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상 연구실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등)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0조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1조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및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2조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20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를 적용받는 연구실로서 연구활동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연구실	법 제19조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건강진단)을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21조
사.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4조 및 법 제15조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란 중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은 고압가스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고, 라목은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에 한정한다.

대상 연구실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관리규정)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2조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 또는 제20조(사용신고 등) 제3항을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4조 및 법 제15조
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4조 및 법 제15조
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안전교육)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란 중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은 액화석유가스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고, 라목은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에 한정한다.

대상 연구실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안전관리규정)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2조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2조(시설과 용기의 안전유지)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4조 및 법 제15조
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또는 제44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제1항을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4조 및 법 제15조
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1조(안전교육)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6. 「도시가스사업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가목란 중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은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고, 나목란 중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은 가스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에 한정한다.

대상 연구실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4조 및 법 제15조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안전교육)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7. 「원자력안전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은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특정핵물질 등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대상 연구실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
가. 「원자력안전법」 제30조(연구용원자로 등의 허가) 또는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 발생장치 사용등의 허가등)제1항 및 제3항을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2조
나. 「원자력안전법」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2조(검사) 또는 제56조(검사)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4조, 법 제15조 및 제31조

다. 「원자력안전법」 제91조(방사선장해방지 조치)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4조, 제15조 및 제21조제1항
라. 「원자력안전법」 제98조(보고·검사등)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24조
마. 「원자력안전법」 제106조(교육훈련)제1항을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상 연구실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운영)를 적용받는 연구실로서 안전관리 등급이 3등급 또는 4등급에 해당하는 연구실	법 제14조 및 제15조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상 연구실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를 적용받는 연구실	법 제14조 및 제15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소방안전 등 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6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 라.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 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소방 안전관리자
 -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7.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8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저위험연구실(제10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관련)

저위험연구실은 다음 각 호의 연구실을 제외한 연구실을 말한다.

1.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연구실
2. 화학물질, 가스, 생물체, 생물체의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세포 또는 혈액을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 제74조제1항제1호, 제77조제1항제1호 및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계·기구 및 설비를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가 장착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연구실 안전점검의 직접 실시요건(제10조제2항 관련)

1. 일상점검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		물적 장비 요건
연구활동종사자		별도 장비 불필요
2. 정기점검 및 특별안전점검		
점검분야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요건	물적장비 요건
일반안전, 기계, 전기 및 화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인간공학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또는 화공안전기술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안전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가. 안전 나. 기계 다. 전기 라. 화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기능장·기사 자격 취득 후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가. 일반기계기사 나. 전기기능장·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 다. 화공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4.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5.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로서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정전기 전하량 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

	6. 법 제6조의2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 관리자(이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한다)	
소방 및 가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방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2. 소방 또는 가스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안전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가스기능장·가스기사·소방설비기사 자격 취득 후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가스산업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서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5.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가스누출검출기 가스농도측정기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산업위생 및 생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산업위생관리기술사 2. 산업위생, 보건위생 또는 생물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안전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 취득 후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분진측정기 소음측정기 산소농도 측정기 풍속계 조도계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의 직접 실시요건 (제11조제1항 관련)

진단 분야	진단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	물적 장비 요건
일반안전, 기계, 전기 및 화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인간공학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또는 화공안전기술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박사 학위 취득 후 안전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가. 안전 나. 기계 다. 전기 라. 화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기능장·기사 자격 취득 후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가.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나. 일반기계기사 다. 전기기능장·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 라. 화공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4.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로서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정전기 전하량 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
소방 및 가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방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2. 소방 또는 가스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안전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가스기능장·가스기사·소방설비기사 자격 취득 후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가스산업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서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가스누출검출기 가스농도측정기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산업위생 및 생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산업위생관리기술사 2. 산업위생, 보건위생 또는 생물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안전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분진측정기 소음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풍속계

3.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 취득 후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조도계
---	-----

비고: 물적 장비 중 해당 장비의 기능을 2개 이상 갖춘 복합기능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개별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연구실 안전점검 대행기관의 등록요건 (제14조제2항 관련)

1.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추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 분야로 한정한다)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소방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또는 화공안전기술사
- 2) 안전,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산업위생, 보건위생 또는 생물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안전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다음의 분야별로 지도사·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기능장·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각 1명 이상

분야	인력
일반안전, 기계, 전기 및 화공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 분야로 한정한다),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소방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가스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또는 가스산업기사
산업위생 및 생물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2. 장비: 다음 각 분야별 장비를 모두 갖추 것. 다만, 해당 장비의 기능을 2개 이상 갖춘 복합기능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개별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분야	장비
일반안전, 기계, 전기 및 화공	정전기 전하량 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
소방 및 가스	가스누출검출기, 가스농도측정기,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산업위생 및 생물	분진측정기, 소음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풍속계, 조도계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요건 (제14조제2항 관련)

1.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추 것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 분야로 한정한다)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소방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또는 화공안전기술사
- 2) 안전, 기계, 전기, 화공, 소방, 가스, 산업위생, 보건위생 또는 생물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안전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다음의 분야별로 지도사·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기능장·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안전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각 1명 이상

분야	인력
일반안전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기계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분야로 한정한다), 기계안전기술사, 일반기계기사
전기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분야로 한정한다), 전기안전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
화공 및 위험물 관리	산업안전지도사(화공안전 분야로 한정한다), 화공안전기술사, 화공기사, 화공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소방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가스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또는 가스산업기사
산업위생 및 생물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2. 장비: 다음 각 분야별 장비를 모두 갖추 것. 다만, 해당 장비의 기능을 2개 이상 갖춘 복합기능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개별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분야	장비
일반안전,기계, 전기 및 화공	정전기 전하량 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절연저항측정기
소방 및 가스	가스누출검출기, 가스농도측정기,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산업위생 및 생물	분진측정기, 소음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풍속계, 조도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에 대한 처분 기준(제14조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 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한다.
- 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마. 제4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제4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이 경우, 적발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 바. 어떤 위반행위든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 제1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을 후 다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본다.
- 아. 3차 위반이 업무정지 6개월인 경우, 4차 위반인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한다.
-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 있다.
 - 1) 가중 사유
 -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실 안전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감경 사유
 -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연구실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카.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한 경우	법 제17조 제4항 제1호	등록취소	-	-
2. 타인에게 대행기관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17조 제4항 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3. 대행기관의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 제17조 제4항 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 제4항 제4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5. 대행기관이 법 제13조제1항의 안전 점검지침 및 정밀 안전진단지침을 준수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 제4항 제5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6. 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자로 안전점검	법 제17조 제4항 제6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				
7.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을 성실하게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 제4항 제7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8.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	법 제17조 제4항 제8호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요건 (23조제2항 관련)

1.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기술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안전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1) 안전
 - 2) 기계
 - 3) 전기
 - 4) 화공
 - 5) 산업위생 또는 보건위생
 - 6) 생물
- 나.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기사 자격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안전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다.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2.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할 것
3.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실을 확보할 것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적발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법령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3항 제1호	100	200	400
나.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3항 제2호	100	200	400

다. 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3항 제3호	100	200	400
라.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않거나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3항 제4호 및 제5호	100	200	400
마.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1항제1호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6조제2항 제1호	200	400	800
바. 법 제15조제1항 및 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1항제1호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6조제1항 제1호	500	1,000	1,500
사.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6조제3항 제6호	100	200	400
아.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법 제46조제3항 제7호	100	200	400
자. 법 제20조제2항을	법 제46조제2항	200	400	800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제2호			
차.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6조제3항 제8호	100	200	400
카.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2항 제3호	200	400	800
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련 예산을 배정 및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6조제3항 제9호	100	200	400
파.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안전관련 예산에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6조제3항 제10호	100	200	400
하. 법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련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46조제3항 제11호	100	200	400
가.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6조제3항 제12호	100	200	400
나.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이나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6조 제3항 제13호	100	200	400
다.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46조제1항 제2호	500	1,000	1,500
라.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46조제3항 제14호	100	200	400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보고서

기관명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주 소				
연구활동 종사자 수	총 인원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명	명		

성 명	자 격	지정 연월일	직위 및 직책	전담·겸임 구분
		. . .		
		. . .		
		. . .		
		.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연구주체의 장)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자격·학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재직증명서 3. 업무분장표(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포함)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